

수원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40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및 구상금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7. 11. 10.

판결 선고 2017. 12. 15.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단621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피고는 2003.경 의왕시 I 외 3필지 지상에 E 상가(이하 'E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4.경 평택시 F 상가(이하 'F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건축주이다.
- 2) (주)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E와 F상가의 분양대행을 의뢰받아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나. E 수분양자들의 피고 소유 F상가에 대한 가압류

피고로부터 E상가를 분양받은 H 외 10인(이하 'E상가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E상가가 부실시공되어 스프링클러 보조펌프 불량, 소방펌프 누수 등 하자가 있다면서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가합398호)를 제기하는 한편 2006. 2.경 피고 소유의 F상가 201호 등 20개 점포를 가압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0081호, 청구금액 165,000,000원).

다. 원고의 손해배상 관련 합의 및 변제

- 1) 피고는 F상가가 위와 같이 가압류되어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E상가 수분양자들과 만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해 합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2006. 2. 26. E상가 수분양자들의 대표격인 E 관리소장 G(E상가503호 수분양자 J의 사위이기도 하다)과 사이에 "본인 A은 금 10,000,000원을 27일 G에게 지급하고, 3. 26.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이유 : 평택 가압류 취하 및 소송취하"라고 기재된 합의지불각서를 작성(위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06. 2. 27.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G이 지정한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1)하고, 이후 원고가 1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3) 이후 E상가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6. 3. 8.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0081호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고, 2006. 2. 27.경 본안소송도 취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6가합398호 사건의 공동피고이던 K에 대한 소는 원고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06. 6. 12.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5, 16, 19, 22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를 위해 E상가 수분양자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E 수분양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추후 이를 지급해주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그럴 경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합의금 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E상가의 시공사를 소개하고 공사를 관리감독한 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원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E상가 수분양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이하 3 주장이라 한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매도인은 피고이고, E상가 수분양자들이 소송 및 가압류를 한 상대방 역시 피고였으므로, E상가의 하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고로 판단되고, 원고는 당시 F상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어 원만한 분양을 위해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를 위해 E상가 수분양자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없다(원고가 E상가의 시공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합의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가 G이 지정한 L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이는 원고가 부담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성질은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거나 원고의 합의금 지급에 따른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거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런데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2016. 2. 24.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334호)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③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래니, 판사 박성민, 판사 차주희

1) 원고는 피고와 2004.경 F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보증금조로 92,000,000원을 지급하였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위 92,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G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다.